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4.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4월 6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4.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김종호)

가. 제안이유

- 상위법 및 타법 제 개정에 의해 일치하지 않는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및 관련 조문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 공공건축물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삭제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 사업 정의 신설
- 야간경관계획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 사업 시행의 규정에서 삭제함

(안 제3조~제4조)

○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8조)

-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총사업비 5억 원 이하의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 공공건축물 및 야간경관 시설 심의대상에서 삭제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및 별표 심의대상 개정

○ 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제10조)

○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디자인 관련법 제 개정에 따라 상위법 조문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 정비 및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관련 조문과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구 도시공간 및 도시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2조는 도시디자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안 제2조제1항, 제4항, 제5항)
- 안 제3조제2항제4호 및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 사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삭제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을 「서울시 디자인 조례」 관련 규정 내용을 반영, 총사업비 5억에서 총사업비 10억 미만 사업으로 변경하고(제2항제1호), 도시공공건축물 및 야간경관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제2항제3호, 제5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사항의 신설과 별표 심의대상을 개정하였고(제2항제9호 및 안 별표)
- 안 제10조에서는 소위원회 심의 자문 사항에서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공공건축물 및 경관 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소위원회 운

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및 2016.2.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관련 내용을 반영,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또한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대상 등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60 호
----------	---------

제출연월일 : 2018.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도시디자인 관련 법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및 관련 조문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도시공간 및 도시디자인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 정의에서 공공건축물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 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는 야간경관계획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 사업 시행의 안에서 삭제함(안 제3조~제4조)

다.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8조)

-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운영토록함
- 2) 「경관법」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공공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함
-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의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인 야간경관 시설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함
- 4)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및 별표 심의대상 개정

라. 소위원회 운영기준 간소화(안 제10조)

마.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경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서울특별시 도시 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 위촉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여, 조례에 규정함

라. 입법예고(2018.2.22. ~ 3.14.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색채·조명 등 주변 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말한다.”를 “도시 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란 구 전체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구 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디자인 사업”이란 도시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도시디자인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를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의” 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9호를 같은 항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단, 야간경관 시설은 제외)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서울형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은 제외

제8조제3항 중 “디자인위원회”를 “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명 분야의”를 “조명·범죄예방 분야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1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중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소집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제8조제2항 관련)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p>도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p>	<p>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p>	
<p>도시철도시설</p>	<p>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p>	
<p>하천시설물</p>	<p>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p>	
<p>전원설비</p>	<p>가. 송전탑, 변압탑</p>	
<p>자전거 이용 시설</p>	<p>가. 자전거보관대 등</p>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그 밖의 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 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색채·조명 등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말한다.</p> <p>2.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p> <p>3. "공공시설물"이란 별표의 도시디자인대상시설물을 말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①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p> <p><삭제></p> <p>4.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란 구 전체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5. "도시디자인 사업"이란 도시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p> <p>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4. 야간경관계획 등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략)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
-----도시디자인위원회-----.

② (생략)

1.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5.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
----도시디자인 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1.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생략)

5. 별표의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 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 8. (생략)

<신설>

<신설>

9. (생략)

③ 디자인위원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 디자인위원회의-----

제9조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7. ~ 8.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단, 야간경관 시설은 제외)

10.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서울형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은 제외

11. (현행 9호와 같음)

③ 위원회-----
----- 위원회의-----

제9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도시계획·건축·조경·조형예술·색채·디자인·환경 및 조명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3. (생략)
- ④ (생략)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생략)
1. 공공건축물·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2. ~ 4. (생략)
- ③ ~ ④ (생략)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
---- 조명·범죄예방 분야의 -----

3.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위원회) ①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② (현행과 같음)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임기) -----
-----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략)

제17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1.(생략)

2. 가로판매대, 마을버스폴사인, 방호울타리, 휴지통 등 서울시 표준형 또는 일반형 설계를 반영한 안건

3.(생략)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1.(현행과 같음)

〈삭제〉

3.(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 나. 구에서 건축하는 협의(허가)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 다.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4항)과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개 정 안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제8조제2항 관련)

1.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 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마. 보도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15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부속 시설물	가. 가로등 나. 트랜치, 맨홀	※서울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문화관광 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각종 안내표지판 라. 동상기념비 등(「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의 심의대상시설물은 제외한다)	
가로녹지 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 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2. 그 밖의 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밀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표지판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블라드, 보호펜스	
지하철부대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4. 기타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기타 시설물	가. 광장 나.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서울시디자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